

중소기업구조 개선자금

연리6.25% 20억원까지 지원

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은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하여 신규시설구입, 유휴설비인수, 공장인수 등에 지원하는 제도다. 올해 지원규모는 7,000억원이다.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신청일 현재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북한진출 중소기업이다.

그러나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기업,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,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25% 이상이고 수출액이 1억원이상인 중소기업, 중소·벤처 창업자금, 특별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은 적용에서 배제된다.

또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,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거나 지원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한 기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.

지원범위는 기업이 생산설비를 구입·개체하거나, 정보화 촉진을 위해 시스템 및 설비를 구입·개체하는 경우의 소요자금,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(시설자금의 30% 이내)이다. 초기가동비 지원은 신규설비 구입, 공장인수 초기에 발생하는 재료구입비, 시제품제작비 등을 고려한 것이다.

또 인수·합병 등에 소요되는 구조조정 자금으로 법원, 한국자산관리공사, 금융기관의 경매물건을 낙찰 받은 경우 경락가액 등이 지원된다. 지원조건은 대출금리 연 6.25%(변동금리)이며 대출기간은 8년 이내(거치기간 3년 포함)이고 대출한도('02년도는 매출액기준 적용배제)는 소요자금의 100% 이내로 업체당 연간 총 20억원 이내(다만 장치산업의 경우 30억원까지)이다. 지원한도는 창업 및 진흥기금 융자사업 지원자금을 합하여 잔액기준으로 업체당 50억원(또는 매출액의 125%)이다.

신청·접수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이며 접수기간은 자금소진시 까지이다.

문의처 : 중소기업청 기업진흥과(02-509-7037~40)

중소기업진흥공단 경영지원팀(02-769-6873~5)

◆ 2002년도에 달라진(변경된) 것

항목	2001년도	2002년도	비고
전업율	제조업등의 경우 전업율 30%일 것	삭제	제조업종 이외는 지원대상
지식기반 서비스업	지원	지원제외	별도 지식기반 서비스지원자금으로 지원
업력	2년이상 가동중인 중소제조업	삭제	
초기가동비	시설자금의 30%이내	IT업종등 지식기반관련 업종은 100%이내	업종특성상 시설자금이 소액인 반면 운전자금 성격의 초기가동비 소요
대출한도	당해연도 20억 이내	좌동, 다만 장치산업은 30억까지	